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2637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06. 28. 정영환 의원 등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07. 0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07. 12.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채무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채무보증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다. 보증채무의 변경, 관리,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23호
- 예고기간: 2023. 6. 28.(수) ~ 2023. 7. 3.(월) [5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없음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가. 제정 취지(필요성)

- 건전한 채무관리를 위해 보증채무부담행위와 관련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검토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채무보증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4조)
 - 채무보증신청: 사업계획서,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
 - 채무보증승인: 군이 채무보증 시 의회 의결을 받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
 - 채무보증서발급: 채권자가 담보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군수는 채무보증승인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 보증서 발급
- 보증채무의 변경, 관리,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보증채무 변경 시에도 채무보증 신청, 승인, 보증서 발급에 관한 규정 준용
 - 보증채무현황을 매년 분기별 작성 관리
 -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 이행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다. 종합의견

-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고성군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채무보증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채권자의 담보 확보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7. 12. 원안 가결함.